

의안번호	2200201
의 퇴 인	조지연 의원
회 답 일	2024. 7. 1.
추 계 번호	24A0529

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안

【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 (기금의 설치)	정부는 전략산업 ¹⁾ 및 전략기술 ²⁾ 을 육성·보호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강화기금(이하 “첨단전략산업기금”)을 설치 - 첨단전략산업기금은 ①정부출연금, ②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, ③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, ④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, ⑤공공자금관리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 - 첨단전략산업기금은 ①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 지원 및 기반조성 사업, ②특화단지 조성·운영 및 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 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	의무규정
2	안 제6조제2항 (기금의 관리 및 운용)	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음	재량규정
3	안 제7조제1항 (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강화기금심의회)	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심의회를 구성·운영	의무규정

1)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의미하며, 「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반도체 분야 4개 산업, 디스플레이 분야 5개 산업, 이차전지 분야 4개 산업, 바이오 분야 2개 산업 등 총 15개 산업임(2024.6. 기준)

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“국가첨단전략산업”(이하 “전략산업”이라 한다)이란 전략기술을 연구·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을 말한다.

2)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의미하며, 「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반도체 분야 8개 기술, 디스플레이 분야 4개 기술, 이차전지 분야 3개 기술, 바이오 분야 2개 등 총 17개 기술이 지정되어 있음(2024.6. 기준)

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국가첨단전략기술”(이하 “전략기술”이라 한다)이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·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·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을 말한다.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조 (기금의 설치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6조제2항 (기금의 관리 및 운용)	
3	안 제7조제1항 (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 강화기금심의회)	

2. 상세 사유

- 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보호·육성을 위하여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으로, 시행될 경우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
 - (안 제3조) 기존에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수행하던 사업이 첨단전략산업기금으로 이관되는 경우, 해당 사업의 예산액은 회계가 변동된 것에 불과하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증가시키지 않음.
다만,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신설됨에 따라 사업 수행 범위를 확대하면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예수¹⁾하는 등 전체 예산 규모가 확대될 수 있는데, 이 경우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
 - (안 제6조제2항)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 기관에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므로 국가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

1) 안 제4조(기금의 조성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5. 「공공자금관리기금법」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

- (안 제7조) 첨단전략산업기금심의회를 구성·운영하는 경우 외부 위원에게 지급되는 심의 수당 및 회의 부대 비용 등으로 국가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
-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신설에 따라 확대될 사업의 범위와 재정 투입 규모, 기금의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인력의 수와 기본경비, 심의회의 구성 범위와 회의 주기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, 현 시점에서 소요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(안 제3조)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은 일반회계 등에서 이관되는 기존 사업의 예산을 제외한 순증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나,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로 인해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확대될지 예측할 수 없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예수 규모 등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음
 - (안 제6조제2항) 수탁 기관에 지급되는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사업의 예산 규모와 난이도를 기준으로 필요 인력의 수 등을 가정하여 산출되나, 현 시점에서 기금의 예산 규모와 이를 재원으로 실시될 사업의 종류 및 난이도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참고로,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4개 기금의 2024년도 기금 운영 예산을 보면, 기금별로 최소 12억원에서 최대 1,280억원으로 큰 차이가 있어 타 기금의 사례를 준용하여 재정소요를 제시하기 어려움
 - * [참고자료]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금 운영 예산 편성 현황(2024)
 - (안 제7조) 첨단전략산업기금심의회 운영에 따른 회의 수당 등의 지급액은 외부 위원 수에 수당 단가와 회의 횟수 등을 곱하여 추계할 수 있으나,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합리적인 가정을 통해 재정소요를 산출하기 곤란
- 이에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김효진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효진	02-6788-4654	hjkim1991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금 운영 예산 편성 현황(2024)

(단위: 백만원)

기금명	실시주체	기금 운영 예산(2024)		
		인건비	관리운영비*	합계
전력산업기반기금	전력기금사업단	4,611	1,946	6,557
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	한국산업기술진흥원, 한국석유화학협회	842	345	1,187
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	한국원자력환경공단	923	481	1,404
무역보험기금	한국무역보험공사	82,468	45,535	128,003

주: 운영관리비는 기금운영관리비, 기본경비, 정보화경비, 기금관리비 등 기금의 관리운영을 위해 편성되는 예산을 모두 포함한 것임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 「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」를 바탕으로 제작됨